#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선갑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 2199 발의년월일 : 2017년 10월 31일

발 의 자 : 김선갑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기대·김생환·김인제·김창수·

맹진영·박호근·서영진·송재형· 이윤희·최판술 의원(10명)

#### 1. 제안이유

「하천법」의 개정(2016.1.19.)으로 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(법 제89조)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허가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(제11조 삭제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하천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허가수수료의 징수) ① 「하천법」 제	<삭 제>
8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하천의 점용 또는	
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관리청이 현금 또는 서	
울특별시수입증지(자치구청장이 징수하는 경우	
에는 해당 자치구의 수입증지)로 부과 징수하	
거나 해당관리청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	
자화폐·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	
② 하천관리청은 점용허가 등의 신청이 제7조	
또는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	
른 점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	
당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	